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8473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이현직(소송구조)

변론 종결 2020. 6. 10.

판결 선고 2020. 7. 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6142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F, D(이하 'B', 'F', 'D'이라고만 한다)은 연대하여 142,074,417원 및 그 중 95,810,000원에 대하여,

2) 피고는 B,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17,790,407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3) 피고는 B, D과 연대하여 38,733,149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4) B, E, F은 연대하여 1,969,782,176원 및 그 중 1,485,400,256원에 대하여 각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2. 12. 23.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D, E, F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D, E, F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0. 3. 3.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1. 4. 15.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F이 2011. 4. 15.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같은 날 취임 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B과 사이에, B이 각 피보험자들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증보험계약을 지칭할 때는 순번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
등으로 칭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보험자	계약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1	I(주)	2011. 2. 25.	179,111,892원	2011. 3. 1. ~ 2014. 2. 28.	E, 피고
2	(주)J	2010. 3. 31.	109,000,000원	2009. 10. 1. ~ 2012. 9. 30.	D, 피고
3	(주)N	2010. 12. 14.	222,733,500원	2010. 12. 14. ~ 2013. 12. 13.	피고

다. 피고 및 E, D은 위 표 연대보증인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B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피고가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핀다).

라. 이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각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피보험자	지급일	보험금	지연손해금(기준일 2015. 12. 31.)	합계
----	------	-----	-----	-----------------------------	----

1	I(주)	2013. 5. 2.	9,000,000원		
		2014. 7. 9.	4,500,000원		
		합계	13,500,000원	4,290,407원	17,790,407원
2	(주)J	2014. 6. 25.	32,000,000원	6,733,149원	38,733,149원
3	(주)N	2012. 9. 24.	7,000,000원		

마.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B은 원고에게 그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그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1)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B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원고는 B으로부터 연대보증을 피고에서 새로운 대표이사인 F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 1)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B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일인 2011. 2. 25.에는 피고가 해외 출장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 서명하지도 않았다.
- 2) 피고는 B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B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B은 원고에게 B의 대표이사가 피고에서 F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연대보증을 피고에서 F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연대보증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A 주식회사 O 대리점(이하 'O 대리점'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란에 각 자필 서명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2. 22.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한 후 2011. 3. 18. 국내로 입국하여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일인 2011. 2. 25.에는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실제로 담당한 O 대리점의 담당자의 다음과 같은 회신내용을 보면, O 대리점의 담당자는 귀국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 서명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피고 작성의 소급각서(연대입보각서)와 당시 작성한 메모 내용까지 함께 제출하고 있어 그 회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2011. 2. 25. 당시 피고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에 직접 자필 서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011. 2. 25. 당시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달리 피고는 해외출장 중이어서 피고가 입국한 다음날 오후에 B 대표 사무실에서 소급각서(연대입보각서)와 함께 피고가 직접 자필 서명하였다. 일정 진행은 B의 업무 담당 G, P가 진행하였다. 자필서명 중 O 대리점의 담당자가 피고에게 '출장 후 피곤하실텐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피고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건강합니다.'라고 말하고 B의 중동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서의 청약서후면에 O 대리점의 직원 Q이 " 2010. 4. 1. 14:10"에 피고가 직접 자필 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 기재한 내용이 존재한다.

③ 이 사건 제1, 2, ③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란의 피고의 글씨 및 서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모두 동일하게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1, ② 보증보험계약의 각 연대보증인란에는 모두 각 연대보증인들이 자필 서명을 하였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다른 연대보증인과 피고의 글씨 및 서명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연대보증인 또는 O 대리점의 담당자가 일괄하여 피고의 서명을 대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2699 구상금)의 판결에서 R공제조합과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도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연대보증계약서에는 피고의 도장이 제3자에 의하여 날인되었고, 그 제3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의 성립이 부정된 것으로서, 피고가 직접 자필 서명한 이 사건과는 그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인바, 위 관련사건의 판결 선고 사실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사실이 부정될 수는 없다.

2)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나.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나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0. 3. 3.부터 2011. 4. 15.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B의 실질적인 대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당시 대표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과 피고 사이의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② 피고는 B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2. 1. 및 2012. 2.경 수회에 걸쳐 B의 담당자에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한 연대보증계약에서 자신을 모두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③ B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관련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인을 피고에서 신임 대표이사인

F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④ 이에 따라 B은 2012년경 S은행 및 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을 피고에서 신임 대표이사인 F으로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에서 약 1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B의 대표이사를 퇴임하였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점, ② 비록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는 B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포함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③ 피고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감사로 재직했던 B의 대표청산인 G은 제1심 법원의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원고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게 연대보증인을 피고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과의 연대보증계약은 모두 해지되었으며, B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연대보증인의 변경 요청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가 B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 그 무렵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광, 판사 박상수, 판사 정은영